

목 차

● 고 시

○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-60호 :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
인가 고시-----1

고 시

●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6-60호

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223호(2008.07.03)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되고 2008.10.27.로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0-7호(2010.04.12)로 구역지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되고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0-12호(2010.5.20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92호(2010.12.30)로 정비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1-32호(2011.06.07)로 구역지정(경미한변경) 및 지형도면 작성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1-38호(2011.06.30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2-19호(2012.04.05)로 관리처분계획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2-158호(2013.12.1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4-40호(2014.07.0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5-21호(2015.04.3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5-72호(2015.12.17.)로 관리처분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시 제2016-28호(2016.05.26.)로 공사완료고시된 신정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9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8월 30일
양 천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신정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33-1번지 일대
나. 면 적 : 54,683.00㎡(택지 : 44,011.60㎡, 공공시설 : 10,671.40㎡)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신정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(조합장 정길동)
나. 주 소 :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10, 402호
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(최초) : 2016년 8월 23일(2012년 4월 5일)
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
가. 토지면적 : 변경

나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: 변경

다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: 변경

라.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변경

마.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부담규모 : 변경

6. 관계서류 : 생략 (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균형개발과 비치서류와 같음)